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충남 당진시)

□ 민원 제목 : 출산지원금 지급 요청(제도개선 권고)

□ 신청 취지

- 2023년부터 ○○○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세쌍둥이를 조기 출산 후 피신청인에게 2023. 7. 10.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세쌍둥이 중 2명은 조례에 따라 신청인의 당진시 거주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지급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실제 1년 이상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단지 출산일 이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출산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조례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출산 신생아가 셋째아 미만일 경우 1개월, 셋째아 이상의 경우 12개월 전부터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정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신청인은 당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약 3개월 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출산지원금 전액 지급은 어렵다

□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3. 3. 8. ○○○동 전입신고하였으며, 2023. 6. 23.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신생아 출생일 전 3개월 17일 거주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일부지급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당진시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야육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출생일을 기준으로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출생 순위	지급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진시 ○○○동에 전입 신고 후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거주 중.
- 신청인의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당진시 ○○읍 소재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동 월세계약 기간은 2022. 5. 7. ~ 2023. 5. 6.(12개월)임.
- 신청인의 첫째자녀는 ○○읍 소재의 중학교로 전학을 간 사실을 확인함.

라. 2019. 6. 10. 국민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출산 근접시기 이사하여 전입·전출한 지자체 어느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조기출산 및 갑작스런 이사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 관계 법령 등

○ 관련 법규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출생지원금 등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50만원
2. 둘째아: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출생순위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① 출생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첫째 · 둘째아: 1개월 전부터
2.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째아 이상 중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출산지원금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 피신청인의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도입되었고,
- 신청인이 세쌍둥이를 출산하고 당진 시 시민으로 1년 넘게 사

실상 거주하고 있고 첫째 자녀가 2022년 당진시 ○○읍 소재에 중학교로 전학을 온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원만을 목적으로 주소를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 및 독촉하고 있는 사실을 미추어 볼때 출생일 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경우 별도 지원요건 규정이 없어 일체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일부만 지원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실상 거주요건을 인정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충남 당진시)

□ 민원 제목 :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의견표명)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동 000-0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 △△△△△ 인근 △△△△△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편입된 같은 동 &&&-&의 세입자로 실거주하였으나, 거주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민원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편입된 같은 동 540-4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규정에 따라 유상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이 불가하다.

□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충남도의 보조사업인 ○○○○개선지원 사업으로 당진시 ○○동 000-0번지 일원 1,708㎡에 대하여 2023. 7. 7. 이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영업손실 등의 보상 협의 중인 상황임
-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외국인으로 보상 협의 시점에 거주지를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였음, 지난 2018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임대기간 2년) 제출, 공공요금을 직접 납부한 이력이 없으며 임차인에게 월세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한 상황을 확인함.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2018. 12. 31. 임대차계약하였고 임대인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자 정보 확인결과 가정용 전기사용을 위해 가구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질병관리청장이 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민원 사업 구역 내 주택을 주소로 등록하여 2022년부터 3회 동안 예방접종한 이력을 확인함.

□ 관계 법령 등

○ 관련 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유상세입자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원인이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임대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기 사용자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등록 주소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19년 1월 부터 2023. 12월 현재까지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거이전비 지급여부는 실제 거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 참조)

-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의 세입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세입자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